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전종덕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3.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종덕 의원)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
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현행법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지역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실태 파악과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